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50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최혁진 · 손 술 · 이재강
임미애 · 김준형 · 이주희
정춘생 · 한창민 · 김재원
용혜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촉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목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부령에는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와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물류창고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난방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난방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복합물류창고사업자 또는 물류창고업자는 제7조제4항 및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냉·난방 설비 등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는 것 <후단 신설> 가. ~ 다. (생략) 4. (생략) ⑤ (생략)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이 경우 다목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② (생략) ③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또는 입지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이 경우 해당

④ · ⑤ (생략)	<u>공동부령에는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와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물류창고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